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00

발의연월일: 2021. 7. 2.

발 의 자: 백혜련 · 양이원영 · 김승원

한준호 · 김윤덕 · 홍정민

김홍걸 · 정성호 · 이해식

정정순 · 오영환 · 김남국

윤후덕 • 민병덕 • 임종성

주철현 • 김병욱 • 전용기

민형배 • 이학영 • 박성준

문정복 · 서영석 의원

(23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방화셔터, 방화스크린을 사용하는 등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화염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이동하여 대형화재로 발전하여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화재강도가 높은 물류창고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함으로써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 및 제84조).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창고의 방화구획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8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 및 방화구획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 도제한 등) ① (생 략) 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 위 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 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 ----. 다만, 대통 설> 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창고의 방화구획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로 정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 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정)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 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 ----. 다만, 대통령 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령으로 정하는 물류창고 지하 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

한 연면적에 산입한다.